

# ◆ 영유아거치대 시방서 ◆

## 1.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장애인편의시설에 사용하는 영유아거치대의 품질, 규격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 1.1 적용기준

영유아거치대의 시설사양 및 규격은 장애인, 노인,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설치메뉴얼에 따른다.

- (1) 장애인, 노인,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2008. 3 21 법률제8974호)
- (2) 장애인, 노인,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 
(일부개정2008. 2. 29 대통령령 제20679호)
- (3) 장애인, 노인,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
(개정2008. 3. 3 보건복지부령1호)

## 2. 재질

- 2.1 HDPE (High -density Polyethylene)
- 2.2 ABS 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

## 3. 품질규정

- 3.1 접이식 또는 벽면수납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.
- 3.2 최소 20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.
- 3.3 가로 300mm 이상, 세로 470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.
- 3.4 형상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한다.



CPC 100



## 4. 설치방법

- (1) 바닥으로부터 0.3미터에서 0.4미터 내에 고정하고 흠을 펜으로 마킹한다
- (2) 벽면에 10Ø 드릴비트로 구멍을 뚫은 후 칼블럭을 박는다
- (3) 제품을 칼블럭에 맞추어 피스로 고정시킨다.
- (4) 잘 보이는 곳에 영유아거치대 스티커를 부착한다.
- (5) 제품에 따라 각제조사의 별도 설치도면과 설명서에 따른다.